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호의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9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의 “② 영”을 “영”으로 한다.

제30조 제목의 “제30조(대차대조표에의 계상)”을 “제30조(재무상태표에의 계상)”으로 하고, 본문의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6조 제2호의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8조 제2항의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기초서류”로 한다.

제41조의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44조 본문의 “같다.”를 “같으며, 선임계리사는 제2호에 대한 검증 및 확인 업무와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로 하고, 제2호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적립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으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계리적 최적가정의 검증·확인에 관한 사항

제45조 제1항의 “거쳐”를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로 하고,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선임계리사의 최초 임기는 3년 이상으로 하고, 선임계리사의 최초 선임시 임기가 만료된 직후 재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1조 제3항에서 정한 선임 절차를 따른다.

⑦ 선임계리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임의사와 사임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단, 질병, 승진 등으로 인한 사임의 경우에는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2)]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로 한다.

[별지 제14호]의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자본감소의 승인신청) (생략)	제13조(자본감소의 승인신청)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재산목록과 <u>대차대조표</u>	2. ----- <u>재무상태표</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29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산)	제29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산)
① 영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보험료 적립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초율 등을 적용한 순보험료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없다.	① <삭 제>
② 영 제6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산방법 등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計上)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영 ----- ----- ----- ----- ----- -----.
제30조(<u>대차대조표</u> 에의 계상) 보험회사가 법령에 따라 <u>대차대조표</u> 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영 제63조 및 이 규칙 제29조를 준용한다.	제30조(<u>재무상태표</u> -----) ----- ----- <u>재무상태표</u> ----- -----.
제36조(보험계약 이전의 인가신청) (생략)	제36조(보험계약 이전의 인가신청) (현행과 같음)

1. (생략)

2. 각 보험회사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3. ~ 8. (생략)

제38조(보험계약 이전 인가의 통지 등) ① (생략)

② 보험계약을 이전한 보험회사가 그 이전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사용하던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법 제139조에 따른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가 있을 때에 이전받은 보험회사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청산인의 결산에 관한 보고) 보험회사의 청산인은 「상법」 제533조제1항·제534조제5항 및 제540조제1항에 따라 총회에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사업보고서 또는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보험계리사 등의 업무) 법 제181조제3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각 보험회사의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3. ~ 8. (생략)

제38조(보험계약 이전 인가의 통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기초서류-----

-----.

제41조(청산인의 결산에 관한 보고) -----

----- 재무상태표, ----

-----.

제44조(보험계리사 등의 업무) --

----- 같으며,

<신 설>

1. (생 략)

2.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
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제45조(선임계리사의 선임절차
등) ① 법 제181조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하
거나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
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보
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② ~ ⑤ (생 략)

선임계리사는 제2호에 대한 검증
및 확인 업무와 제1호 및 제3호부
터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계리적 최적가정의 검증·확인
에 관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3. -----
----- 적립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제45조(선임계리사의 선임절차
등) ① -----

-----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
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별지 제1호서식(2)]

(앞 쪽)

예비허가신청서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지점)	처리기간 3개월
(생 략)	
첨부서류(외국어로 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 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1. ~ 4. (생 략)	
5. 본점의 최근 3년간 <u>대차대조표</u> 및 <u>손익계 산서</u>	
6. ~ 13. (생 략)	

[별지 제14호]

보험계약 (전부·일부) 이전 인가신청서
(생 략)

첨부서 류	1. (생략) 2. 각 보험회사의 재산목록과 <u>대 차대조표</u>	수수료 없 음

⑥ 선임계리사의 최초 임기는 3년
이상으로 하고, 선임계리사의 최
초 선임시 임기가 만료된 직후 재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
81조 제3항에서 정한 선임 절차를
따른다.

⑦ 선임계리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임
의사와 사임사유를 보고해야 한
다. 단, 질병, 승진 등으로 인한 사
임의 경우에는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2)]

(앞 쪽)

예비허가신청서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지점)	처리기간 3개월
(현행과 같음)	
첨부서류(외국어로 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 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1. ~ 4. (현행과 같음)	
5. 본점의 최근 3년간 <u>재무상태표</u> 및 <u>포괄손 익계산서</u>	
6. ~ 13. (현행과 같음)	

[별지 제14호]

보험계약 (전부·일부) 이전 인가신청서
(현행과 같음)

첨부서 류	1. (현행과 같음) 2. 각 보험회사의 재산목록과 <u>재 무상태표</u>	수수료 없 음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보험과	
연 락 처	(02) 2100 - 2963